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42호

엑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제2020-5호	'20.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020-6호	'20.02.1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KTX 천산아산역사
주식회사 블루오션 주식회사	제2020-7호	'20.02.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카페캠프통	제2020-8호	'20.0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제2020-9호	'20.0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27

●문화재청공고제2020-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최광지 홍패 (崔匡之 紅牌)	1점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
2	육조대사법보단경 (六祖大師法寶壇經)	1책	백천사
3	백자 항아리 (白磁 大壺)	1점	부산광역시 (부산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불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불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불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 명 칭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 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읍 **길

○ 수 량 : 1점

○ 규 격 : 62.4×61.6cm, 배접지 포함: 64.0×64.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조성연대 : 1389년(고려 창왕 1)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붉은색으로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라북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최씨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인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이 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1호(2014.3.20. 지정)
- 명 칭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소유자(관리자) : 백천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31 백천사
- 수 량 : 1책
- 규 격 : 25.1×15.8cm, 반곽(半郭) 18.1×12.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00년(고려 충렬왕 26) 경 판각·인출 추정
- 사 유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인 당나라 혜능(慧能, 638-713)이 소주(韶州)의 대범사(大梵寺)에서 대중에게 육조(六祖: 중국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법계를 이은 제6대 祖師)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과 문인들의 수행을 위하여 설법한 10가지 법문을 그의 제자 법해(法海)가 집성한 것이다.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덕이 선사(德異 禪師)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덕이 선사는 고려 승려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같은 임제종(臨濟宗) 승려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와 함께 고려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선종의 성립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으나, 백천사 소장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보이는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서문 하단에는 ‘박선묵인(朴銑默印)’, ‘덕운(德雲)’과 미상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박선묵은 1908년(융희 2)년 각종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1912년에는 인왕사 옛터에 선암정사(禪巖精舍)를 건립하는 등 조선 말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로서, 그의 장서인은 이 경전의 전래 경위와 쓰임을 유추하게 해 준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중요성이 있으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백자 향아리(白磁 大壺)

- 명 칭 : 백자 향아리(白磁 大壺)
- 소유자(관리자) : 부산광역시(부산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52.6cm, 몸통지름 45.3cm, 입지름 20.5~21cm, 밑지름 19.3~19.5cm
- 재 질 : 백자
- 형 식 : 백자입호(白磁立壺)
- 조성연대 : 조선 후기(17세기 말~18세기 초)
- 사 유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향아리(白磁 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52.6cm나 되는 대형(大形) 입호(立壺)이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하였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게 당당하며, 담청백색(淡淸白色)의 유색(釉色)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안정된 품격을 보여준다. 이 ‘백자 향아리’는 안정된 기형(器形)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 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향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향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대형(大形) 입호(立壺)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燔造: 도자기 굽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도자사(陶磁史)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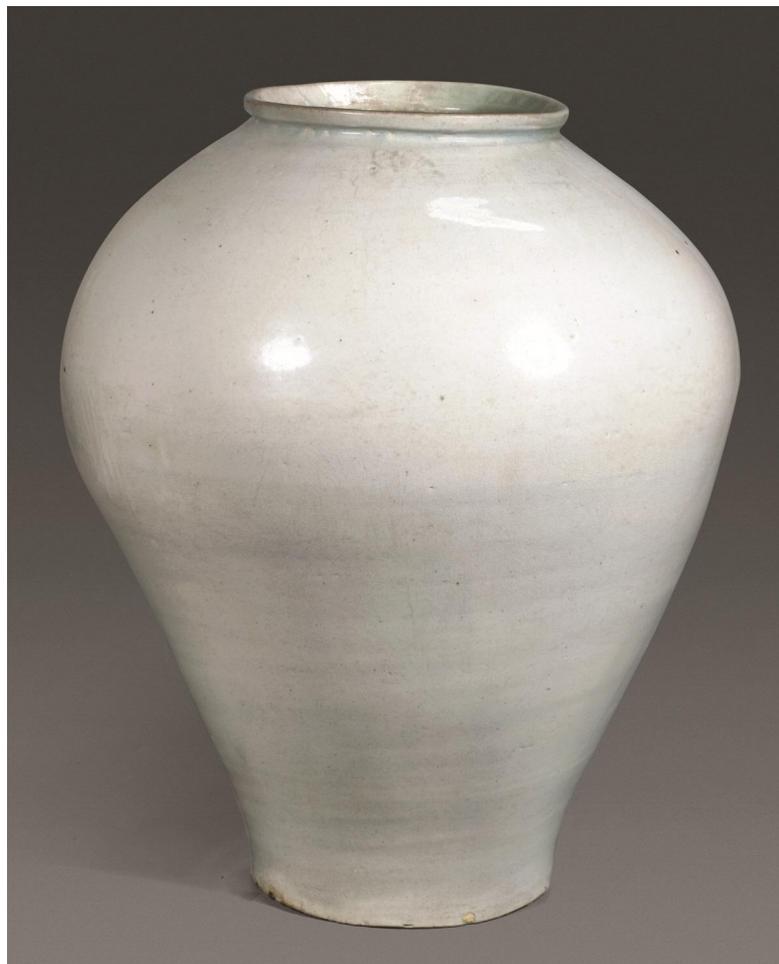
【지정예고 사진】



<최광지 홍패>



<육조대사법보단경>



<백자 항아리>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10-045호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산모도우미파견사업단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12	경영악화 폐업 (2020.2.2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3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송달내용: 「선박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전 재통지(빅토리1002호)
2. 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과태료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한회사 빅토르해운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42, 602호	「선박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빅토리1002호(MPR-156203, 2389톤)에 대해 2019년 9월 8일까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함(위반일수 35일 이상)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적용법령: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중간검사)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과태료)
5.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 안전과	담당자	이재영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전화번호	061-280-1647
	전자우편 주소	leejy1111@korea.kr			팩스번호	061-280-1655
제출기한		2020년 3월 30일 까지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